

대구예술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

(개정 2005.08.23. 교무위원회)
(개정 2009.07.28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0.04.14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3.05.14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4.02.04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8.06.14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(개정 2019.12.30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1.02.22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1.04.01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에 따라 졸업논문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논문제출 자격)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로 한다. 단, 후기졸업예정자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(졸업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)

- ① 논문 지도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은 전공에서 정한다.
- ② 전공주임교수는 졸업 2학기전(4학년 1학기중) 개인별 논문작성 분야와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중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.
- ③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한다.
- ④ 졸업예정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졸업 2학기전(4학년 1학기 중) 소정기일 내에 소속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의 규격 및 대체방법 시행) ① 졸업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.

② 전공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실기발표, 작품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5조(논문심사) ①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에 2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심사교수를 정하며, 부득이한 경우 겸임교수를 심사교수로 배정할 수 있다.

②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권위자를 심사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교수가 판정한다. 2인이 심사할 경우 합의에 따르되 합격과 불합격이 상충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3인 이상이 심사할 경우는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.

④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심사 결과를 기말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

하며, 증빙 제출자료는 총장이 정함에 따른다.

⑤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 및 논문 미제출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며,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료자로 한다.

⑥ 논문, 작품 등이 모방했거나 복사 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, 졸업을 유보한다.

제6조(졸업논문 제출 시기) 논문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졸업학기의 기말시험 종료 3주 이전에 소속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전공주임교수가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논문 대체방법 시행사항) 실기발표, 작품발표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공개발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논문 불합격자의 구제) 논문 불합격자 및 논문 미제출자는 매학기 소정의 제출기간에 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논문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.

제9조(졸업논문 시행계획) 전공주임교수는 졸업논문의 규격 및 대체방법, 심사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며, 졸업논문 심사 종료시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기타) 졸업논문 시행시 붙임 양식을 활용하고, 결과 보고시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제 11조(학부운영) 학부(예·체능학부제외)로 입학한 학생 일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전공주임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(신설 2022.08.01.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돈보스고예술학교로 입학한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2013.5.14)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2014.2.4)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개정된 [별표1]의 모바일게임웹툰 전공 실기발표 및 작품발표내용은 2021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개정된 [별표1]의 미술콘텐츠 전공 실기발표 및 작품발표내용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개정된 [별표1]의 사진영상미디어 전공 실기발표 및 작품발표내용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되, 2022년 8월 졸업자는 전공에서 정함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졸업작품(실기.논문) 발표계획서

지도교수	전공주임	학부장

전 공 :	학 번 :	성 명 :	(인)
아래와 같이 졸업작품(실기.논문)발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			
1. 작품(실기.논문)제목 :			
2. 작품(실기.논문)내용 :			
3. 작품(실기.논문)제작 진행 일정 계획 :			

20 년 월 일

(뒷면)

작품(실기.논문)제목 및 규격

연 번	제 목	규 격	재 료	비 고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계				

(별지 제3호 서식)

졸업작품(실기.논문) 심사위원 배정표

소 속	성 명

위와같이 상기인(들)을 졸업작품(실기, 논문) 심사교수로 배정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전공주임 _____ (인)

학 부 장 _____ (인)

대 구 예 술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(별지 제4호 서식)

졸업논문 심사 요지서

지도교수	전공주임	학부장

전공	학번	성명	
제목			
심사요지 :			
20 년 월 일			
심사교수	합격	불합격	(인)
	합격	불합격	(인)
	합격	불합격	(인)
	합격	불합격	(인)
	합격	불합격	(인)

(별지 제5호 서식)

졸업논문제출원서

지도교수	전공주임	학부장

전 공 :	학 번 :	성 명 :	(인)
아래와 같이 졸업논문을 제출합니다.			
1. 논문 제목 :			
2. 논문 내용 :			

20 년 월 일

(별지 제6호 서식)

졸업작품제출원서

전 공:	학 번 :	성 명 :
작품명제 1. 2. 3. 4. 5.		
1.	2.	
3.	4.	
5.	전공주임 (인) 학 부 장 (인)	

※ 논문의 경우 편철된 책자 별첨 제출.

※ 실기 및 작품발표의 경우 촬영 파일 첨부, 대표 5매 내외 촬영본 프린트 부착.